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가단500097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선정당사자)A

변론 종결2016. 5. 31.

판결 선고2016. 6. 16.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126,928원 및 그 중 159,335,684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2. 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선정자 C은 피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5. 10. 15. 접수 제258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2015. 5. 7. 접수 제115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선정자 D은 피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414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13. 10. 16. 선정자 주식회사 B(이하 선정자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 161,5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15.(이후 2015. 10. 15.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선정자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선정자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2013. 10. 16.경 하나은행으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와 선정자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선정자 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선정자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선정자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연체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자연손해금과 권리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는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선정자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 변제

(1) 선정자 회사는 2015. 6. 9.경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하나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이유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2. 23. 하나은행에 159,335,684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는 채권보전조치비용을 위하여 1,971,404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미수위약금은 819,840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는 위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달 전인 2015. 5. 6. 선정자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재산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5. 5. 7. 접수 제115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위 근저당권설정 이후 피고 A는 2015. 10. 14. 선정자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5. 10. 15. 접수 제258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피고 A는 2015. 5. 15. 인척관계인 선정자 D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414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선정자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126,928원(대위변제금 159,335,684원 + 대지급금 1,971,404원 + 위약금 819,8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59,335,68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인 2016. 2. 4.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자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또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참조).

(2) 먼저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선정자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선정자 C과 2015. 5. 6.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5. 6. 9.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에 체결되어 있었고, 그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터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후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선정자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위 근저당권설정 이후 피고 A는 2015. 10. 14. 선정자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원고의 선정자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다음으로 선정자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선정자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선정자 D과 2015. 5.15.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5. 6. 9.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위 각 계약 전에 체결되어 있었고, 그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터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후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선정자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손해행위 해당 여부

위 각 계약 당시 채무자인 피고 A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A는 위 각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적극재산이 있었다.

1 소장 별지 1,2항 (E, F 각 임야)	45,000,000
2 위 별지 3항 (G전)	3,708,800
3 위 별지 4항 (성남 H에 있는 I아파트 304-802)	755,000,000
4 광주 J아파트 101-404 (갑7)	295,000,000
계	1,098,708,800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아래와 같이 1,211,431,244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HSBC은행 대출(I아파트담보)	375,740,000
2 하나은행 물상보증(I아파트담보)	282,000,000
3 수협 대출(J아파트 담보)	366,000,000
4 원고 보증	162,126,928
5 하나은행 보증	25,564,316
계	1,211,431,244

이와 같이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선정자 C와 사이에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정자 C 명의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 선정자 D와 사이에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선정자 D 명의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 A에게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선정자 C, D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5) 피고 A, 선정자 D, K(이하에서 '피고 A 등'이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 등은 이에 대하여 선정자 회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사를 수주하여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자 회사가 체납한 국세를 2015. 9. 23. 납부하여 선정자 회사가 정상화되었으므로, 피고 A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선정자 회사에 대한 위 2015. 6. 9.자 부실처리는, 국세체납금액 7천만 원, 체납발생일 2015. 3. 17.을 기초로 2015. 5. 28. 통보받은 신용관리정보등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는 선정자 회사에 대하여 세금 완납 및 이를 증명할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였는데 결국 선정자 회사는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점, 선정자 회사는 국세청과 사이에 체납국세 분납약정을 함으로써 위 신용관리정보등록이 2015. 9. 23.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2015. 10. 14.경 선정자 회사가 다시 2015. 7. 1.자 국세체납금액을 이유로 신용관리정보등록 된 사실이 원고에게 통보되었던 점, 원고는 이에 따라 2015. 12. 23. 하나은행에 159,335,684원의 보증 채무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 등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선정자 C 사이에 2015. 5.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선정자 C 사이에 2015. 10. 14.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선정자 D 사이에 2015. 5.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선정자 C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자방법원 보령등기소 2015. 10. 15. 접수 제258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5. 7. 접수 제115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선정자 D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414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오상용

별지